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정원엔시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HP RX2800 i6 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6,40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(주)정원엔시스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인텔리빅스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스트리밍S/W 및 서버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5,62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우리정보기술(주)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스마트교차로영상분석서버 및 영상저장장치 및 웹방화벽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7,08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30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우리정보기술(주)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아이티코어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교통정보수집분석서버 응용S/W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1,36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 아이티코어스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일오정보통신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ACES(스트리밍,공단연계스트리밍S/W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3,14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일오정보통신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포스텍네트웍스(주)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상황판 월맵주변장비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42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8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포스텍네트웍스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티아이에스에스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서버 엔진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8,48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티아이에스에스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요술지팡이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와우자S/W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,40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(주)요술지팡이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소프트탑텐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백업관리S/W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45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29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소프트탑텐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아이시큐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방화벽 NGF1500 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3,71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아이시큐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우리아이티에스 주식회사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IPSW(영상변환및스위칭장비) 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5,04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우리아이티에스 주식회사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굿어스데이터(주)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오라클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1,97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굿어스데이터 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정원엔시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HP서버 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3,64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정원엔시스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대형웍스(주)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통합로그관리시스템, NAC, IPS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6,95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대형웍스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태웅산전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무정전전원장치 (UPS-50kv, UPS-10kv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,75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태웅산전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씨앤이정보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CNE DR4500 24TB, Rapid Recovery v6.0 ENT 2TB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60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씨앤이정보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동인시스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교통신호제어 소프트웨어(통합운용S/W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 25,17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동인시스템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아이시큐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방화벽 (NGF1500) 외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,78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아이시큐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아이비즈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L4 PAS-K3200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,92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아이비즈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세기상사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SAC-HE-(050AUS ,075AUS, 100AUS, 150AUS), A3GE3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25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세기상사 대표 최길환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(버스운영과)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우리아이티에스 주식회사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L2스위치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(홈페이지 등))에 대해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(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5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우리아이티에스 주식회사 (인)